



발행인 배규식  
편집인 홍민기  
편집교정 정철

자료문의 KLI 학술출판팀  
주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한국노동연구원  
TEL 044-287-6083  
FAX 044-287-6089

발행일 2020년 12월 15일

# 산재보험 자료 등으로 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근로실태와 고용보험의 적용

장인성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jiang@kli.re.kr)

황선웅 | 부경대학교 교수(shwang@pknu.ac.kr)

4차 산업혁명과 함께 특수형태근로(이하 '특고') 및 플랫폼 노동자 등을 중심으로 고용형태 다양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특고 종사자는 임금노동자와 유사하게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한 대가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임금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특고 종사자의 생계 안정 및 원활한 재취업을 위한 고용보험 적용 필요성은 2000년대 중반부터 사회적 주요 의제로 논의되었으나 입법화에 성공하지는 못했다. 문재인 정부도 특고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을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고용보험제도개선TF」와 「고용보험위원회」 등을 통해 적용 방안을 준비해 왔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특고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과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더욱 증대되면서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한 특고의 고용보험 적용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2020년 5월에는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우선 통과되었고(6.9 공포, 12.10 시행 예정), 2020년 9월에는 특고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의안번호 제3779호)」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3803호)」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하에서는 행정통계 가운데 특고 종사자의 근로 현황을 담고 있는 유일한 자료인 산재보험DB 자료 분석을 통해 특고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고, 특고 관련 실태조사에 나타난 직종별 소득 수준을 정리함으로써 특고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관련 논의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 I. 산재보험 자료를 통해 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현황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은 2008년 보험설계사를 비

롯한 4개 직종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올해 1월 콘크리트믹서트럭운전자 직종이 건설기계운전자(덤프트럭, 굴삭기, 지게차 등 27개 포함)로 범위가 확대되고 7월에는 방문판매원 등 5개 직종

〈표 1〉 산재보험 가입사업장 및 가입 대상 종사자 수 현황 (2020년 8월말 기준)

(단위: 명)

		가입 사업장 수	입직 종사자
전체(14개 직종)		12,010	607,414
2008.7.1. 적용	소계	4,860	432,524
	보험설계사	1,806	351,704
	학습지교사	625	45,600
	콘크리트믹서트럭운전사	1,936	3,158
	골프장 캐디	493	32,062
2012.5.1. 적용	소계	4,025	54,528
	택배기사	2,321	24,845
	퀵기사	1,704	29,683
2016.7.1. 적용	소계	269	22,748
	신용카드모집인	8	14,963
	대출모집인	232	7,773
2019.1.1. 적용	대리운전기사	29	12
	건설기계운전사	9	15
2020.7.1. 적용	소계	2,847	97,599
	방문판매원	1,806	54,886
	대여제품점검원	12	24,099
	가전제품설치원	126	2,365
	화물차주	903	16,249

주 : 건설기계운전사는 분류의 변경으로 인해 확대된 종사자의 집계가 불완전  
 자료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DB」.

〈표 2〉 사업장 규모별 종사자 수

(단위: 명, %)

	합계	5인 미만	5~29인	30~99인	100~499인	500~999인	1,000인 이상
보험설계사	351,704 (57.9)	19,298 (5.5)	13,733 (3.9)	22,651 (6.4)	53,160 (15.1)	43,377 (12.3)	199,485 (56.7)
학습지교사	45,600 (7.5)	4,381 (9.6)	1,539 (3.4)	1,019 (2.2)	3,670 (8.0)	2,447 (5.4)	32,544 (71.4)
골프장 캐디	32,062 (5.3)	2,136 (6.7)	6,719 (21.0)	18,108 (56.5)	4,783 (14.9)	11 (0.0)	305 (1.0)
건설기계운전사	3,173 (0.5)	182 (5.7)	2,416 (76.1)	575 (18.1)	- (0.0)	- (0.0)	- (0.0)
택배기사	24,845 (4.1)	12,836 (51.7)	6,430 (25.9)	995 (4.0)	349 (1.4)	489 (2.0)	3,746 (15.1)
퀵기사	29,683 (4.9)	7,658 (25.8)	5,013 (16.9)	2,047 (6.9)	13,302 (44.8)	1,663 (5.6)	- (0.0)
대리운전기사	12 (0.0)	11 (91.7)	1 (8.3)	- (0.0)	- (0.0)	- (0.0)	- (0.0)
대출모집인	7,773 (1.3)	1,298 (16.7)	897 (11.5)	511 (6.6)	1,818 (23.4)	1,478 (19.0)	1,771 (22.8)
신용카드모집인	14,963 (2.5)	1 (0.0)	- (0.0)	- (0.0)	647 (4.3)	51 (0.3)	14,264 (95.3)
방문판매원	54,886 (9.0)	28,444 (51.8)	3,749 (6.8)	784 (1.4)	3,857 (7.0)	6,206 (11.3)	11,846 (21.6)
대여제품방문점검원	24,099 (4.0)	63 (0.3)	3 (0.0)	- (0.0)	2,526 (10.5)	- (0.0)	21,507 (89.2)
가전제품설치원	2,365 (0.4)	790 (33.4)	489 (20.7)	173 (7.3)	856 (36.2)	- (0.0)	57 (2.4)
화물차주	16,249 (2.7)	7,423 (45.7)	6,525 (40.2)	1,132 (7.0)	893 (5.5)	276 (1.7)	- (0.0)
합계	607,417 (100)	84,524 (13.9)	47,514 (7.8)	47,995 (7.9)	85,861 (14.1)	55,998 (9.2)	285,525 (47.0)
고용보험피보험자	(100)	(16.0)	(27.5)	(15.8)	(16.6)	(6.4)	(17.8)

자료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DB」,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DB」.

2020년 8월을 기준으로 총 1만 2천여 개의 사업장에 60만 7천여 명의 종사자가 가입 대상

이 추가되는 등 현재 총 14개 직종이 대상이다. 2020년 8월을 기준으로 총 1만 2천여 개의 사업장에 60만 7천여 명의 종사자가 가입 대상이다.

사업장 규모별로 종사자 비중을 살펴보면, 직종별 편차가 큰 가운데 전체적으로는 절반에 가까운 47%가 1,0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에 속해 있고, 5인 미만 사업장에는 13.9%가 속해 있다. 임금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규모별 종사자 비중을 비교해 볼 때 대규모 사업장 종사자의 비중이 높은 점이 두드러진다. 이는 주로 종사자 규모가 가장 큰 보험설계사의 56.7%가 대규모 사업장에 속해 있고, 신용카드모집인과 대여제품방문점검원도 각각 그 비중이 95%, 89%가 넘기 때문이다. 학습지교사 역시 71.4%로 대규모 사업장 종사자 비중이 높은 편이다. 그에 비해 택배기사와 방문판매원은 각각 절반이 넘는 51.7%, 51.8%가 5인 미만의 영세한 사업장에 속해 있다. 화

물차주와 가전제품설치원도 45.7%, 33.4%로 영세사업장 종사자 비중이 높다.

특고로 성별로 구분하면, 여성이 64.9%로 남성의 두 배 가까이 차지하며,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가 각각 31.4%, 30.2%를 차지하여 가장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전체 특고 60만 7천여 명 가운데 여성 40~50대가 26만 2천여 명으로 43%를 차지한다.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특고와 반대로 남성의 비중이 56.5%로 더 크며, 연령별로는 30대와 40대가 가장 비중이 높다. 여성의 경우 특고는 40~50대의 비중이 높은 데 비해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20~50대까지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표 3〉 성별·연령별 현황

(단위: 명, %)

	합계	20세 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남성	207,477 (34.2) (56.5)	1,030 (0.5) (0.5)	26,986 (13.0) (13.9)	49,260 (23.7) (25.4)	59,595 (28.7) (26.2)	49,175 (23.7) (20.7)	21,431 (10.3) (13.3)
여성	394,403 (64.9) (43.5)	249 (0.1) (0.7)	18,074 (4.6) (20.2)	59,299 (15.0) (21.9)	129,688 (32.9) (23.2)	133,444 (33.8) (21.6)	53,649 (13.6) (12.6)
외국인 등	5,534 (0.9)	2 (0.0)	513 (9.3)	2,547 (46.0)	1,480 (26.7)	821 (14.8)	171 (3.1)
합계	607,414 (100.0) (100.0)	1,281 (0.2) (0.6)	45,573 (7.5) (16.6)	111,106 (18.3) (23.8)	190,763 (31.4) (24.9)	183,440 (30.2) (21.1)	75,251 (12.4) (13.0)

주: 파란색은 비교를 위해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성별 연령대별 비중을 계산한 것  
자료: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DB」,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DB」.

## II.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입·이직 및 근속

산재보상법령에 따라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거나 제공받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해야 하므로 적용제외 신청과 상관없이 입·이직 신고를 하여야 한다. 「산재보험DB」의 전체 특고 입직자 수는 새로운 직종이 추가되

면서 증가폭이 커졌다. 입직자의 연평균 증감률을 보면, 전체적으로는 4.4% 증가하였으나 직종별로는 학습지교사와 신용카드모집인, 대출모집인 등이 각각 -3.9%, -4.5%, -0.9% 감소했으며, 퀵기사와 택배기사가 각각 27.6%와 9.1% 증가하였다. 종사자 규모가 가장 큰 보험설계사는 0.7% 증가하였다.

특고 종사자의 2019년 월평균 이직률은 월말 기준 등록자와 1달간 이직신고자(건수)를 활용하여 도출하였을 때 3.3%이다. 연평균 이직률은 1년 동안 등록된 인원(중복제거)과 1년 동안의 이직신고자(중복제거)를 활용하여 도출하였을 때 26.0%로 나타났다.<sup>1)</sup>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고용보험 자료를 활용하여 2019년 피보험자의 이직률을 구해보면, 월평균 이직률은 4.2%, 연평균 이직률은 32.3%로 특고 종사자

특고 종사자의 2019년  
월평균 이직률은 3.3%,  
연평균 이직률은 26.0%

〈표 4〉 입직자 연평균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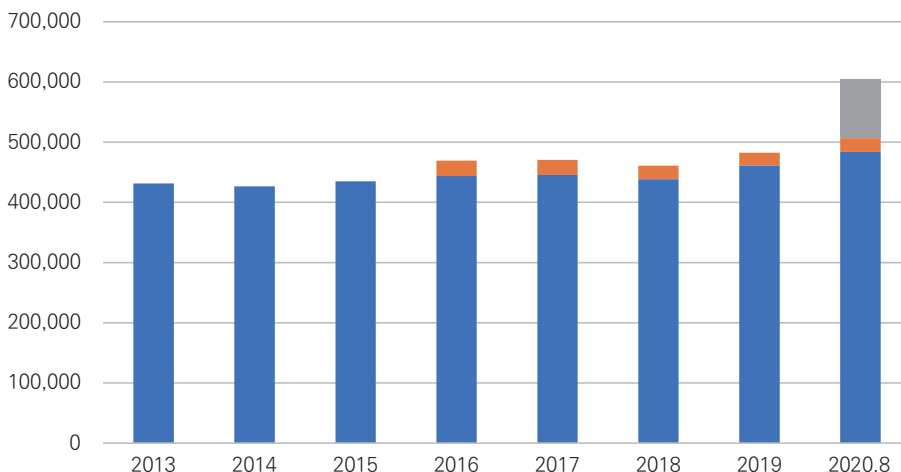
(단위: %)

합계	보험 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 기사	퀵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4.4	0.7	-3.9	3.9	9.1	27.6	-0.9	-4.5

주: 1) 2013~19년: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퀵기사.  
2) 2016~19년: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3) 분류변경으로 건설기계운전사는 제외.  
자료: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DB」.

[그림 1] 연도별 전체 입직자 수 추이(2013~2020.8)

(단위: 명)



주: 주황색은 2016년 이후, 회색은 2020년 이후 신규 적용직종의 입직자 수. 건설기계운전사는 제외.  
자료: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DB」.

1) 연평균 이직률을 신고건수를 기준으로 작성할 경우 동일인이 여러 차례 이직하는 경우로 인해 이직률이 높아진다. 이직률의 기준을 무엇으로 할지는 목적에 따라 다를 것이다. 예컨대 일반적인 노동이동성(labor turnover)을 파악하고자 할 경우는 전체 이직건수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으며, 고용보험 적용 시의 수급자 규모를 염두에 둔 경우는 중복을 제외한 이직인원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더 유용할 것이다.

〈표 5〉 2019년 산재보험 이직자 수 및 이직률

	등록자 수(A)	이직자 수(B)	B/A
2019. 1월	469,434	16,029	3.4%
2019. 2월	469,918	14,084	3.0%
2019. 3월	469,814	15,827	3.4%
2019. 4월	469,348	14,965	3.2%
2019. 5월	470,689	15,008	3.2%
2019. 6월	472,661	15,423	3.3%
2019. 7월	474,681	15,281	3.2%
2019. 8월	476,213	14,340	3.0%
2019. 9월	478,553	14,710	3.1%
2019. 10월	480,864	16,412	3.4%
2019. 11월	484,986	16,785	3.5%
2019. 12월	486,295	19,417	4.0%
2019. 1~12월 평균			3.3%
2019. 1~12월 누적 (중복제외)	657,159 (중복제외)	170,864 (중복제외)	26.0%

자료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DB」.

$$* \text{ 월 이직률} = \frac{\text{1달간 이직신고자(건수)}}{\text{월말 기준 등록자}} \times 100$$

$$** \text{ 연 이직률} = \frac{\text{1~12월 동안 이직신고자 (1회 이상 중복제거, 170,864명)}}{\text{1~12월 동안 등록자 순인원 (1회 이상 중복제거, 657,154명)}} \times 100$$

〈표 6〉 2019년 고용보험 상실자 수 및 이직률

	피보험자 수(A)	상실자 수(B)	B/A
2019. 1월	13,308,481	902,660	6.8%
2019. 2월	13,423,805	457,846	3.4%
2019. 3월	13,504,641	701,707	5.2%
2019. 4월	13,611,905	554,067	4.1%
2019. 5월	13,665,263	513,435	3.8%
2019. 6월	13,687,202	502,273	3.7%
2019. 7월	13,722,199	612,611	4.5%
2019. 8월	13,756,837	511,659	3.7%
2019. 9월	13,791,087	491,083	3.6%
2019. 10월	13,866,205	498,766	3.6%
2019. 11월	13,904,622	514,232	3.7%
2019. 12월	13,840,893	539,188	3.9%
2019. 1~12월 평균			4.2%
2019. 1~12월 누적 (중복제외)	16,088,893 (중복제외)	5,204,568 (중복제외)	32.3%

자료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DB」.

$$* \text{ 월 이직률} = \frac{\text{1달간 상실자 (건수)}}{\text{월말 기준 피보험자}} \times 100$$

$$** \text{ 연 이직률} = \frac{\text{1~12월 동안 상실자 (1회 이상 중복제거, 5,204,568명)}}{\text{1~12월 동안 피보험자 순인원 (1회 이상 중복제거, 16,088,893명)}} \times 100$$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한편 사업체노동력조사는 근로자의 연 이직률을 별도로 구하지 않고 1년 동안 월 이직률의 평균으로 표현하므로 사업체조사와 비교할 때는 월 이직률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년 동안 이직자의 다수가 중복되나 1인 이상 사업체 내 총량 조사라 중복을 제거할 수 없어서 연 이직률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2019년 사업체노동력조사의 월평균 이직률은 4.7%였다. 사업체노동력조사의 전체 근로자 월평균 이직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임시·일용근로자의 높은 이직률에 기인한다. 상용근로자의 월평균 이직률이 2.4%인 데 비해 임시·일용근로자의 월평균 이직률은 25.3%에 달한다.

한편 2019년 산재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자(건수)의 근속기간을 살펴보면, 전체 상실건수 18만 8천여 건 가운데 근속 1년 이하가 57.7%로 가장 많았다. 그 가

〈표 7〉 2019년 상실자(건수)의 평균 근속기간

(단위 : 명, %)

	합계	1년 이하				
		3개월 이하	1~2년	2~3년	3년 초과	
고용보험 (유사업종)	203,203	50,463	120,689	38,195	16,214	28,105
	(100%)	(24.8%)	(59.4%)	(18.8%)	(8.0%)	(13.8%)
산재보험	188,281	48,092	108,585	35,466	15,914	28,314
	(100%)	(25.5%)	(57.7%)	(18.8%)	(8.5%)	(15.0%)

주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모두 상실 건수 기준으로 비교  
자료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DB」,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DB」.

운데 3개월 이내에 이직한 경우도 전체의 1/5가량이었다. 근속기간이 3년이 넘는 경우는 15%였다. 산재보험 가입 직종과 유사한 직종<sup>2)</sup>에 종사하는 고용보험 가입자 가운데 상실자(건수)의 근속기간은 1년 이하가 59.4%, 3년 초과가 13.8%로 산재보험 가입자와

2019년 산재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자(건수)의 근속기간은  
1년 이하가 57.7%로 가장 많음

2) 고용보험은 특고와 유사한 다음 업종의 근로자와 비교하였다. 도로화물운송업(493), 소화물전문운송업(494),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66), 일반교습학원(855), 스포츠서비스업(911), 무점포소매업(479), 건설장비운영업(426),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762),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953), 가전제품 및 정보통신장비소매업(473).

〈표 8〉 2019년 직종별 이직사유별 현황

(단위: 명, %)

	소계	계약종료	사업의 폐업/휴업	전속성 없음	그 밖의 사유
보험 설계사	110,444 (64.6%)	70,212 (63.6%)	1,006 (0.9%)	(0.0%)	39,226 (35.5%)
학습지 교사	13,174 (7.7%)	4,207 (31.9%)	4,791 (36.4%)	(0.0%)	4,176 (31.7%)
골프장 캐디	9,161 (5.4%)	1,562 (17.1%)	639 (7.0%)	(0.0%)	6,960 (76.0%)
건설기계 운전사	1,523 (0.9%)	364 (23.9%)	49 (3.2%)	(0.0%)	1,110 (72.9%)
택배기사	2,355 (1.4%)	1,067 (45.3%)	336 (14.3%)	(0.0%)	952 (40.4%)
퀵기사	18,638 (10.9%)	8,004 (42.9%)	539 (2.9%)	1,101 (5.9%)	8,994 (48.3%)
대출 모집인	3,506 (2.1%)	1,669 (47.6%)	40 (1.1%)	(0.0%)	1,797 (51.3%)
신용카드 모집인	12,056 (7.1%)	4,205 (34.9%)	(0.0%)	(0.0%)	7,851 (65.1%)
합계	170,857 (100.0%)	91,290 (53.4%)	7,400 (4.3%)	1,101 (0.6%)	71,066 (41.6%)

주: 근로복지공단의 '적용 및 부과업무 처리규정' [별지 11]의 서식에 따르면 이직사유는 ▲계약종료 ▲사업의 폐업/휴업, ▲전속성 없음(퀵서비스 종사자, 대리운전기사에 한함) ▲그 밖의 사유로 구분.

자료: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DB」.

큰 차이가 없었다.

2019년도 이직자의 이직사유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특고의 특성을 반영하여 절반이 넘는 53.4%가 계약의 종료에 따른 이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의 휴·폐업에 따른 이직은 4.3% 수준이었다. 그러나 직종별로 살펴볼 때, 학습지교사는 사업의 휴·폐업에 따른 이직이 36.4%를 차지하여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며, 택배기사도 14.3%로 높은 편이었다. 계약의 종료에 따른 이직은 보험설계사가 63.6%로 가장 높았으며, 골프장캐디는 17.1%로서 낮은 편이었다.

### III. 고용보험의 적용

고용보험이 적용되면 특고도 임금노동자처럼 매월 보험료를 산정·부과하고, 다음연도에 사업주로부터 해당 연도의 보수총액을 신고받아 보험료를 정산한다. 단기노무제공자는 사업주가 매월 제출하는 '노

〈표 9〉 특고 직종별 월 순소득 분포

	평균 (만 원)	구간별 인원 비중(%)		
		179.5만 원 미만	179.5만 ~ 334.4만 원	334.4만 원 이상
보험설계사	251.7	51.5	29.9	18.6
건설기계기사	300.1	11.4	53.2	35.4
학습지교사	143.2	77.9	20.9	1.2
골프장캐디	257.0	20.3	59.7	20.0
신용카드모집인	203.1	54.1	36.6	9.3
택배기사	283.3	15.0	57.7	27.3
퀵서비스기사	203.8	44.8	46.7	8.5
대출모집인	251.1	42.5	37.2	20.3
대리운전기사	132.7	80.7	18.2	1.1
방문판매원	252.0	48.4	26.5	25.1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221.2	53.7	27.4	18.9
방문강사	164.5	61.2	32.8	6.0
가전제품 설치기사	314.8	8.2	53.6	38.2
화물차주	463.6	1.6	28.0	70.4
전체 평균	249.9	44.1	34.4	2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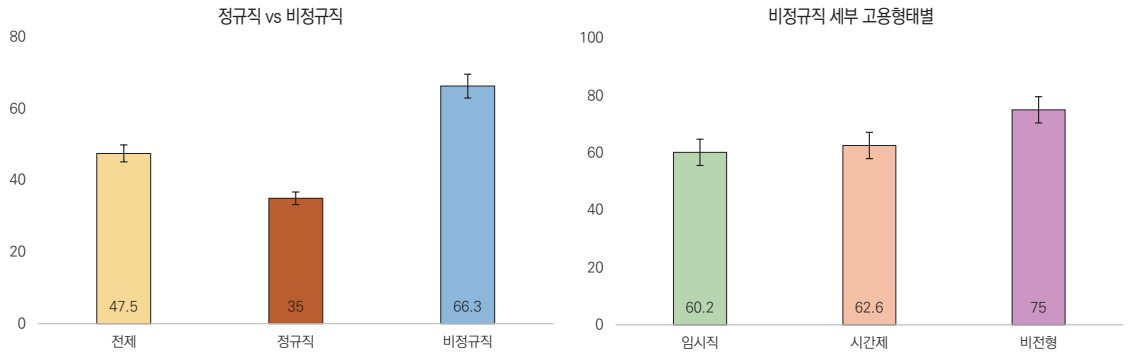
주: 소득구간은 참고를 위해 2020년도 최저임금과 구직급여 상한기준보수에 따라 나누어 본 것임.

자료: 한국노동연구원(2018.1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수입(소득) 및 비용 관련 실태조사」, 여성정책연구원(2020.6),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기준소득액 및 평균임금 등 고시를 위한 소득수준 실태조사」 원자료.

무제공내용 확인신고(가칭)'에 따른 건별 보수의 월 합계액 기준으로 월별 보험료를 부과한다. 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보수액은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비과세 소득과 경비)을 뺀 금액(순소득)으로 정의된다. 신규 입직자 등 소득 확인 및 월평균 보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를 적용한다. 특고의 경우에도 임금노동자처럼 저소득자 보호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수 최저액 이하의 보수 발생 시 그러한 하한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실업급여도 지급한다.

<표 9>는 소득 및 연령 기준을 충족하는 고용보험 적용대상 특고 종사자의 직종별 월평균 순소득과 구간별 인원 비중을 보여준다. 월평균 순소득은 월평균 총수입(세금이나 업무추진비 공제 전 금액)에서 특

[그림 2]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 확률



주 : 코로나19 사태 이후 본인과 본인 가족의 소득이 감소했다는 응답자 비율과 95% 신뢰구간임. 비전형 비정규직의 대부분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임.  
 자료 : 황선용(2020.9), 「코로나19 충격의 고용형태별 차별적 영향」, 『산업노동연구』, 26(3), pp.5-34. 원자료는 「직장갑질119」에서 2020년 4월에 실시한 직장인 1,0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특고 전체 월평균 순소득은 약 250만 원으로 추산**

고 활동을 위한 지출액(교통비, 유류비, 고객 선물비용, 통신비용, 회사 공제금액 등)을 뺀 금액이다. 특고 전체 월평균 순소득은 약 250만 원으로 추산된다. 월평균 순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직종은 화물차주(463.6만 원), 가전제품 설치기사(314.8만 원), 건설기계기사(300.1만 원), 택배기사(283.3만 원) 등이다. 반면, 대리운전기사(132.7만 원), 학습지교사(143.2만 원), 방문강사(164.5만 원), 신용카드모집인(203.1만 원), 퀵서비스기사(203.8만 원)는 월평균 순소득이 132만~203만 원 수준이다.

실직한 특고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특고로서 피보험자 자격을 3개월 이상 유지해야 한다. 또한 근로 또는 노무제공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고, 이직사유가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단, 특고는 임금노동자와 달리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큰 폭의 소득 감소를 겪을 확률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소득 감소로 인한 이직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 이상의 소득 감소를 실업급여 수급자격으로 인정할지는 추후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므로 현시점에 특고의 실업급여 수급 인원 비율을 예측하기는 어렵다.

**IV. 시사점**

임금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특고 종사자 역시 빈번한 이직을 경험하고 있으며 고용보험의 적용은 실직 및 소득 감소 위험을 완화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그러한 긍정적 효과는 이 글에서 살펴본 2015~19년 같은 평상시보다 이번 코로나19 위기와 같은 경기침체 상황에서 더욱 증대될 가능성이 크다.

[그림 2]는 황선용(2020)의 논문에서 인용한 민간공익단체 「직장갑질119」에서 지난 4월 중순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본인과 본인 가족의 소득이 감소했다고 답한 고용형태별 응답자 비율을 보여준다.

이 그림의 비전형 비정규직은 파견·용역 노동자도 일부 포함하고 있지만 대부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구성되어 있다. 고용형태별로는 정규직 35%, 비정규직 66.3%로,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2배가량 높았고, 비정규직 내에서는 비전형 75.0%, 시간제 62.6%, 임시직 60.2%로, 비전형 노동자의 소득 감소 확률이 다른 두 유형의 비정규직보다 10%p 이상 높았다. 노무제공 대가가 건당 수수료의 형태로 계약되는 특수고용 노동자가 코로나19로 인한 업무량 감소의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이다. 다른 유형의 노동자들과 달리 특고 종사자는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가처분소득 감소 경험의 고용형태 간 격차는 이러한 시장소득 감소 경험 격차보다 훨씬 더 클 것이다.

특수고용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의 시급성과 함께 소득 감소 요건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노무제공 대가가 건당 수수료의 형태로 계약되는 특수고용 노동자가 코로나19로 인한 업무량 감소의 피해가 컸음



**KLI** EMPLOYMENT  
& LABOR  
BRIEF